



2021년 『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』 신청 안내

2021년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를 조기신청(2월 중)하여, 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말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결과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통보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
사전심사 주요 내용

신청인

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**내국법인 및 거주자**

신청대상

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·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**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**

신청기한

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며,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

- 세액공제를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

신청서류

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연구개발 보고서, 그 밖에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

신청방법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)

- 전자신고 : 홈택스 ⇨ 신청/제출 ⇨ 일반세무서류 신청 ⇨ 민원명 찾기“연구” ⇨ 조회하기 ⇨ 인터넷신청

- 우 편 : 2021년부터 중소기업 심사는 지방청에서 담당
(국세청 누리집에 우편주소 등 상세 안내)

☑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 → 성실신고지원 → 법인세 → 상세정보 → R&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)에서

① 우편주소 및 연락처와, ② 업종별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사전심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팀 ☎ (031)888-4963~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